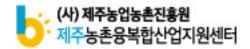
2024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안내



2024, 01,





I . 2024년 연간 사업 운영 계획	05
1.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06
2. 타기관	07
Ⅱ .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추진계획	17
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18
2.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28
3. 지역 및 중앙단위 판로·마케팅	32
4.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6
5.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7
6. 자금(융자)지원	37
7. 6차산업 포장재비 제작 지원사업	38
8. 6차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온라인)	40
9. 제주6차산업협회	42
Ⅲ. 기타자료(인증신청 관련 서류 등)	44



1.2024년 연간 사업 운영 계획

1.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06

2. 타기관 07



1.2024년 연간 사업 운영 계획

01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구분	추진목표	추진시기	비고
	인증심사	예비·신규·갱신	2분기 / 3분기 / 4분기	p.9
	인증 모니터링	(24.1월 기준) 160개소	연중	p.18
	역량강화 교육	예비·신규·갱신 인증설명회 및 인증 소규모그룹 컨설팅	2분기 / 3분기 / 4분기	(일정) p.10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대회 사례원고, 발표 컨설팅지원	3분기	p.29
	우수스타기업	시례원고 컨설팅 지원	2개월마다 , 2개소	p.29
	네트워크 구축	협회 네트워크 성과보고회 운영	1분기	-
	홍보	신규·갱신 인증 현판제작	연중	-
	현장코칭	①유형, ②유형, ③유형	2월~10월	p.21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코칭 고도화사업	5개소 (③유형+사업화지원)	2월~10월	p.24
	홍보	현수막광고	상시	-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유통품평회	(예비)인증사업자 입점 품평회 개최	2분기(제주국제박람회 연계)	p.25
활성화	판촉 지원	판촉지원 (판촉전 개최, 판촉지원)	2월~10월	p.25
포장기	대 지원사업	고향사랑기부제 포장재 지원	2월~10월	p.31
마케!	팅강화사업	온라인 마케팅 강화사업	2월~10월	p.33
<u>농촌</u> 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융자지원 등	상시 (제주시청 농정과,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문의)	p.30



02 | 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도 식품산업과 _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편의시설 지원사업(☎064-710-3133)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4년 4월 ~ 12월

다. 사업량: 2개소

라. 사업비: 75,000천원(자체재원 45,000, 자부담 30,000) *보조율 60%

- 지원범위: 1개소당 22,500천원 지원 * 개소당 사업비: 37,500천원 (보조금 22,500, 자부담 15,000)

* 업체당 사업비는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 추가 가능

마. 사업내용

- 체험·편의시설 보완·확충 및 환경개선 시업
-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2. 신청자격: 공고일(1,18.)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제주시청

• **농정과** _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문의 **27**28-332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사업량:10개소내외

사업예산: 200,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100,000)

- 개소당 사업비: 2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가점부여: 청년창업후계농업인, 유기농·무농약·GAP 인증 업체(농업인)·HACCP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디자인 변경, 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등 포장재비 지원

2. 신청자격

-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¹⁾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예비)사업자
- ② 지원요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농정과 _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문의 ☎728-332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 •사업량: 4개소내외
- •사업예산: 667,000천원(보조 400,000, 자부담 267,000) -개소당 지원한도: 최대 166,7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6,700)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²⁾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 가점부여 : HACCP 인증사업자· 우수농산물(GAP) 또는 친환경 인증사업체,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시설 구축 또는 기계 · 장비 구입
 - * 지원제외: 건축물 신축 비용, 차량(지게차포함) 구입 비용, 소모성 물품

2. 신청자격

-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시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³⁾(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⁴⁾,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 * 가점부여 : HACCP 인증시업자· 우수농산물(GAP) 또는 친환경 인증시업체,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시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 ② 지원요건 (주원료 및 식품영업등록)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 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⁵⁾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처리 농산물(소포장, 절단, 단순 건조 등)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 식품영업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③ 사업장 사전확보

- -사업장은 신청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공증)
- 1)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농정과_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문의 ☎728-332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사업량:10개소내외

• 사업예산 : 사업예산 : 167,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7,000)

- 개소당사업비: 16,7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6,700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공급가만 해당)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⁶⁾

* 가점부여: 청년창업후계농업인, 유기농·무농약·GAP 인증 업체(농업인)·HACCP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 건조기, 슬라이스기, 분쇄기, 포장실린더 등 농산물 가공 기계 · 장비

2. 신청자격

-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시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⁷⁾(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 * 가점부여: 청년창업후계농업인, 유기농·무농약·GAP 인증 업체(농업인)·HACCP 인증사업자
- ② 지원요건 (주원료 및 식품영업등록)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⁸⁾이 50% 이상이어야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식품영업등록 관련 신고가 필요한 농산물 제조가공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야 함
 - * 식품영업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 농산물 단순처리의 경우에도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확보되어야하며, 그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⁹⁾이어야함.

농촌융복합산업 교육 가점

2)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 ①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하는 산업
- ② 지역 생산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 ③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 관광 · 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 ④ ①~③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인증을 받은 자
- 3)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하여야함:[붙임2-2]참고
- 4) 생산자단체: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붙임2]참고
- 5)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6) 현동조합은 「현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현동조합 및 사회적현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7)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붙임2-2]참고
- 8)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9)비닐하우스, 무허가 창고, 비위생적 창고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동정과 _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문의 ☎728-332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사업량: 15개소내외 *신청상황및예산상황에따라변동가능

• 사업예산: 334,000천원(보조 300,000, 자부담 34,000)

- 개소당 시업비 : 최대 22,3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300) 이내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¹⁰⁾ 및 이를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마을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 가점부여 :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유기농·무농약 · GAP 인증 업체(농업인) · HACCP 인증사업자

분야	단위지원사업	내 용	분야별 지원한도				
	① 디자인 제작	브랜드 디자인(BI, CI, 로고 등), 앱디자인 등					
⑦ 서비스 구축		홈페이지, 자사몰 구축, SNS(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블로그 등)	10,000 천원				
	② 온라인 마케팅	팅 판매서비스 운영(라이브커머스 등)					
		※ 키워드 검색광고, 배너 상단 노출 광고비 20% 범위내 가능					
	③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물, LED 광고, 키탈로그 제작 운영 등					
	④ 오프라인마케팅						
(J) 판로개척 및	(상설제외)						
제품개발	⑤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 개발·개선,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체험키트 패키지 개발	천원				
	기존제품 풀질개선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컨설팅 포함)					

2. 신청자격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시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마을회¹¹⁾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원칙

3. 유의사항

- 지원분야(서비스 구축沙, 판로개척 및 제품개발()) 한도 내 지원
-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검색광고 등 ⑦-②항목에 해당되는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키워드 검색광고 등 온라인 광고비 지원 ※ 단, 리워드 광고 등 광고 채널(네이버 등)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자산성 물품구입비, 이체수수료 지원불가
-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인 경우, 동일사업내용(행사일정)으로 타기관 지원받을 경우지원 불가
- 판매상품
 - 제주시에서 재배 ·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조 · 가공한 상품일 것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원칙
 - 가공식품일 경우 식품 제조 · 가공업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 10)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원칙. 또한 지역 생산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 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11) 마을회인 경우 단체명이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되고,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이어야 함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문의 ☎760-2833)

1. 사업개요 (23년 기준)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업예산: 42,000천원(보조 25,000, 자부담 17,000)내외
- 지원비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개소당 사업비: 15,000천원(보조 9,000, 자부담 6,000)내외
 - 개소당 지원한도: 보조금 9,000천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 지원사업비(보조금)는 <u>부가가치세 제외(공급가만 해당)</u> ·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 *가점부여: 농촌융복합산업(예비)인증사업자. 친환경(유기농·무농약)·GAP 인증 농가. 여성사업자(대표) · 청년농업인(대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 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원내용: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 관련 기계 · 장비 지원
 -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감귤농정과 _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문의 ☎760-2884)

1. 사업개요 (23년 기준)

-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업체, 생산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2. 신청자격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6차산업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사업부지 사전확보
 -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부지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신규. 변경 포함) 해야함.
- 상기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적용은 공고일(증빙서류) 기준으로 함

감귤농정과 _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문의 ☎760-2884)

1. 사업개요 (23년 기준)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업예산: 166,500천원(보조 150,000, 자부담 16,500)내외
- 지원비율: 보조금 90%, 자부담 10%
- 개소당 사업비: 5,000천원(보조 4,500, 자부담 500)
 - 개소당 지원한도: 보조금 4,500천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업체, 협동조합,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서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온라인 홍보·마케팅비 지원
 - · 판매채널 구축.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판매기반 구축
 - · 브랜드 BI개발, 포장재 등의 디자인 비용(포장자재 구입은 제외)
 - ·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용(검색 광고 등 소모성 홍보비용 제외)
 - · 기타 비대면 홍보를 위한 시업으로 시업 취지에 적합한 시업

2. 신청자격

- 서귀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혹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가공업체
- 서귀포시 지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서귀포시 지역 내 농특산물을 생산 · 판매하는 협동조합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 실적 사업자에 대해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단, 심사표의 총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 *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 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감귤농정과** _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문의 ☎760-2883)

1. 사업개요 (23년 기준)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업예산: 100백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내외
- 지원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 개소당 지원한도: 보조금 70백만원(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대상: 친환경·GAP 인증(예정) 생산자단체¹²⁾(농업법인 등), 친환경·GAP 인증(예정) 농산물식품가공업체
- •지원내용: 친환경·웰빙작물 원료보관 시설, 가공·유통 기계설비, 공동작업장 등 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 구축

2. 신청자격

-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 ·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도내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등) · 가공업체
 - * 친환경 ·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고자 계획 추진 해야함(사업 완료 시, 인증 사본 함께 제출)
 -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받은 법인은 우선 지원
 - *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농업법인
-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임을 증빙하여이함. 그 밖의 시항은 위 규정 제9항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야함.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12)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_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문의 ☎031-8084-9547)

1. 사업개요 (23년 기준)

- 사업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New Normal)에 맞는 관광 트렌드에 따른 소그룹단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가능한 잠재력 있는 콘텐츠 발굴·확산
- 지원자격: 소그룹단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농촌관광 경영체(신규 지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영체의 경우 1천만원 이상)
 - * 신규 지정(등록) 3년 미만인 경우 매출요건 없음
- 경영체 유형 : 농촌체험휴양마을('20~'22년 소규모 사업 참여한 마을 신청 가능),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규모: 개소당 1,200만원(국비 960만원, 자부담 240만원)
 - * 사업비(국비)는 자부담 확인 후 교부 가능함
- 지원내용 : 사업 유형(아래 유형 참조)별 콘텐츠 개발·시범운영비 지원

체험유형	세부내용
K-컬처 여행	K-콘텐츠(한국의 전통과 문회체험)에 관련된 여행
워케이션 연계여행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cation)* 여행 *워케이션(Worcation) = 일(Work) + 휴가(Vacation)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여행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환경친화적 관광지 여행
치유 및 웰니스형 여행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웰니스* 여행
반려동물 동반여행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

- 지원항목: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에 필요한 직접비 및 운영경비
 - ① 직접비: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콘텐츠 개발, 시범운영 진행을 위한 운영 · 홍보비 등
 - (체험 개발비용) 마을 자원을 이용한 특색있는 소규모 농촌체험상품 제작
 - (시범운영 진행) 시범운영 준비 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 ② 운영경비: 프로그램 개발 · 운영에 필요한 출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 (출장비) 체험프로그램 개발 회의를 위한 출장비 및 회의 경비 등
 - (소모품 구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소모품 구입
 - * 경비의 소모품 구입 용도는 사무용 소모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한함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지원 금 액		
 ①직접비	프로그램 개발비용(사업비의 60%)	경영체별 최대 7,200천원	합계(12,000천원)		
(사업비의 90%)	시범운영 진행(사업비의 30%)	경영체별 최대 3,600천원	= 		
 ②운영경비	출장비	경영체별 최대 600천원	- 국비(9,600천원) +		
(사업비의 10%)	소모품비	경영체별 최대 600천원	자부담(2,400천원)		

- * 지원제외 항목 : 시설·기계장비 등 하드웨어 구입비, 상품가격지원, 지자체로부터 유사 성격의 사업 중복 지원, 단순 팸투어 또는 목적이 불분명한 선진지 견학,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경우
 - 마을 자부담은 시·군비 지원의 경우 시·군 조례를 따름
- ※ 사업비 세부 집행지침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예정
 - 주요내용 : 개발 가능한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츠를 가진 농촌관광 경영체 공모 및 전문 컨설팅 기관 매칭*을 통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진행
 - * 전문 컨설팅 비용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집행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_ 2024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문의 ☎710-3275)
- 식품산업과 2024년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문의 ☎710-3132)
- 식품산업과 _ 2024년 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사업 지원 공고 (문의 ☎710-3173)
- 식품산업과 _ 2024년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계획 공고 (문의 ☎710-3172)

1, 지원 대상 사업

도 홍보관 참가 지원

- 사 업 명 : 제10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박람회
- 기 간: 2024,3.28. ~ 3.31. *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부산 벡스코
- 예 산 액: 20,000천원(업체당 5,000천원 내, 정액지원)
- 사 업 량 : 4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및 기본장치비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내용 : 개별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보조금 지원
- 예 산 액 : 12,900천원(보조 11,600천원 90%, 자부담 1,300천원 10%)
- 사 업 량 : 5개 업체 내외
- 지원한도: 업체당 2,320천원 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한도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및 물품임대료, 항공료, 물류비 등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농· 축산물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1년 이상 운영한 업체 * 도 홍보관 참가업체는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지원 가능
-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_ 2024년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문의 ☎710-3172)

1. 사업개요

- •모집명: 2024년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모집기간: 2024년 1월 22일(월) ~ 2월 5일(월) 18:00까지
-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 도내 소재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중 주된업종*이 제조업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항】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기업의 CI, BI, 포장디자인, 리플렛, 카탈로그, 영상 등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 ※ 기존 홍보물 제작 지원 불가	4개 社 지원 (기업별 최대 200만원)
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 부스 비용 지원	8개 社 지원 (기업별 최대 200만원)
홍보 마케팅비 지원	라디오, 잡지, 신문광고, 온라인 SNS 광고 등 광고비용 지원	2개 社 지원 (기업별 최대 100만원)

* 모집공고 신청업체 수 미달일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 수 조정될 수 있음

농업기술원

• 인력교육팀 _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문의 ☎760-7522)

1. 사업개요 (23년 기준)

- 시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업량: 4개소(요구)
 - * 2023년도 예산확정(2022년 12월) 상황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 될 수 있음
- 사 업 비: 개소당 50,000천원(보조 45,000, 자부담 5,000)
 - * 부담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대상: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추진절차 (23년 기준)

계획수립		대상자 모집공고		서면・발표 평가 및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비 교부 및 집행
22. 8월	>>	22. 8월	>>	22. 9월	>>	22. 12월.	>>>	23,1 ~ 12월

중소기업벤처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_ 제주신사업창업사관학교 (문의 ☎070-8883-1550)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문의 ☎070-8883-1550)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고령자천화기업 (문의 ☎1833-7128)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급시기	고 용목 표 인원	
인증형	고령친회환경 투자비(최대 1억)	지정연도(투자비)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ELI OTT	
창업형	초기투자비(최대 2억)	지정연도(투자비)	5명 이상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1차 년도(인당 300만)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2차 년도(인당 300만)		

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산업육성팀 고충사육시설현대화(축사시설현대화)(문의 ☎044-201-2142)

1. 사업개요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 신규 진입자 진입 확대를 위해 「곤충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곤충생산업 미신고자도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시설·설비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 지원형태: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1%, 5년거치 10년상환
 *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3억원(지원액 기준, 융자 및 자부담 포함)

2. 추진절차 (23년 기준)

참여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으로 공문 신청
 * 신청체계: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11.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추진 계획

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18
2.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28
3. 지역 및 중앙단위 판로·마케팅	32
4.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6
5.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7
6. 자금(융자)지원	37
7. 6차산업 포장재비 제작 지원사업	38
8. 6차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온라인)	40
9. 제주6차산업협회	42



11.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추진 계획

01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TH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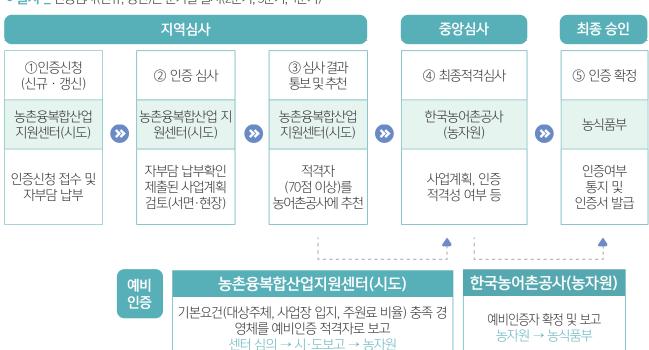
- 목적 _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인증사업자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3) 및 시행('15.6.4)
- 주체 11개 시·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위탁수행(국비50%, 지방비 50%)
- 현황 _ '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2,396개소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2,396	227	220	162	247	369	417	273	250	157	38	36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4.6.3) 및 시행('15.6.4)

🥻 추진 절차

• 절차 _ 인증심사(신규. 갱신)는 분기별 실시(2분기, 3분기, 4분기)





• 예비 · 신규 _ 추진절차(일정 등 변동될 수 있음)

진행	① 예비·신규 인증 안내		② 컨설팅지원		③ 인증 접수		④ 서면·현장실사		⑤ 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			
	제(차 공고 2.13.(화)~3.22.(금)		2월~3월		3,22.(금) 마감		4.1.(월)~4.5(금)		5월			
일정	제2차 공고 4.15.(월)~5.24.(금)	⊗	4월~5월	⊗	5,24.(금) 마감	≫	6.3.(월)~6.5.(수)	>>	7월			
	제3차 공고 6.10.(월)~7.26.(금)						6월~7월	7,26.(금) 마감		8.5.(월)~8.9.(금)		9월
내용	예비·신규 절차·접수·심사 기준 등 안내		예비·신규 인증 관련 컨설팅 2회(무료)		인증 심사비 *자부담입금		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 · 현장실사		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			

• 갱신 _ 추진절차(일정 등 변동될 수 있음)

진행	① 인증 갱신 안내		② 컨설팅지원		③ 인증 접수		④ 서면·현장실사		⑤ 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
	6월~7월만료 15개 2.13.(화)~4.5.(금)		2월~4월		4.5.(금) 마감		4.8.(월)~4.12(금)		5월
일정	9월~10월만료 22개소 4.15.(월)~7.5.(금)	>>	4월~7월	>>	7.5.(금) 마감	>>	7.15.(월)~7.19.(금)	>>	8월
	12월~1월만료 28개소 6.10.(월)~9.30.(월)		6월~9월		9.30.(월) 마감		10.14.(월)~10.18.(금)		11월
내용	갱신 절차·접수·심사 기준 등 안내		갱신 인증 관련 컨설팅 서류 컨설팅 1회 무료 / 사업계획서 컨설팅 필요시 유료 진행		인증 심사비 *자부담입금		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현장실사		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

① 인증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인증 신청(신규, 갱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신청

- * 인증·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증빙서류, 지역농산물 증빙서류 등
- 해당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반드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영체에 한정하여 신청 접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예 : 사과(사과즙, 사과젤리 등))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4,438천원' 달성 및 증빙 * 산출 근거: ('18) 42,066천원 ('19) 41,182, ('20) 45,029, ('21) 47,759, ('22) 46,153 * 창업 3년 미만 경영체는 2개년 평균 농가 소득 적용 가능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사업운영의 형태 1차(원물), 2차(제조·가공), 유통판매, 3차 체험·관광 서비스 등 해당 경영체는 붙임18~20 자료 작성 및 제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관련 증빙서류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대상주체 여부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산물품질관리원) ②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택1	③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④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작성 및 진단서 캡쳐
	★ 농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 정관(법인의 경우)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법인) 또는 운영규정	「농업 관련」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내 「농업 관련」증빙 확인을 위해 「농업 관련」내용의 경영체 정관 설립 목적 또는 사업내용 확인 2) 법인이 아닌 경우(단체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확인 3) 법인과 단체 등 아닌, 개인의 경우 농업인만 신청가능하며 농업경영체증명서 확인

구분	세부내용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형태 및 주재료	· 사업계획서(서식)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예 : 사과(사과즙, 사과젤리 등))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지역비율 (품목)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3.1)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서 내 "주생산품" 란에 작성
T1711H1 L	① 자가생산증명서
자가생산 (23년 기준)	②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23 E · 1E)	③ 농지사진 등
ᅰᄋᄠᆌᆒ	① 계약재배약정서 또는 계약서
계약재배 (23년 기준)	② 농산물 원산지증명(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23 [7 []]	③ 거래내역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등)
ᆔᄌӀ҇҇	① 매입증명서
매입증명 (23년 기준)	② 농산물 원산지증명(농업인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25 [7] []	③ 거래내역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등)
농산물 원산지증명(23년 기준)	필요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양식 사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 입지여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가. 읍·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고시하는" (다음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 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기준

사업장 농촌지역 입지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① 사업자등록증 내 도로명 주소로 확인
- ②「토지e음」도로명 주소 검색 ▶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10호)

- 1. 농어촌지역 지정지역: 대상지역(법정동, 통)내 주거지역
- 2. 대상지역
 - 법정동 기준

구분	법정수	지정대상지역
제주시	19	도남동, 용담2 · 3동, 화북1 · 2동, 삼양1동, 도련1 · 2동, 봉개동, 이라1 · 2동, 오라1 · 2동, 연동, 노형동, 외도1 · 2동, 이호2동, 도두1동
서귀포시	20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 주거지역이 없는 13개동은 농림부고시에 의해 기 지정

- · 제 주 시(12개동) : 삼양3동, 회천동, 용강동, 월평동, 영평동, 오등동, 오라3동, 해안동, 내도동, 도평동, 이호1동, 도두2동
- · 서귀포시(1개동) : 영남동
- 통단위 기준

구분	통수	지정대상지역	비고
제주시	4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 · 13통)	
서귀포시	1	송산동(1통)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과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4,438천원' 달성 및 증빙 * 산출 근거: (18) 42,066천원 (19) 41,182, ('20) 45,029, ('21) 47,759, ('22) 46,153 * 창업 3년 미만 경영체는 2개년 평균 농가 소득 적용 가능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기차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 국세청 신고된 매출증빙자료 (3년, 2023년·2022년·2021년) 제출
 - ①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모두 제출
 -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인 경우, 존재한다면 추후 필히 제출
 - ②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제출
 - ③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증 제출
 - ④ 겸업사업자의 경우, 겸업사업자수입증명원 제출
- 불인정 ▶ 통장내역, 농협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이지 못한 증빙자료

구분	세부내용
기타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인증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 운영 가능 여부 확인 ● (교육 이수증) 교육이수증(중앙·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 (가점) 가점 해당 관련 증빙자료
일자리	 상시 근로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계획서 작성일 기준 *상시(유급) 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 임시 근로자 →임시근로자 근로확인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 (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건축물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법인 또는 이사 등 관계지와 별개인 경우 반드시 포함하며 임대 기간이 인증기간(3년)의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야 함
교육 이수증	 교육이수증 기간 2024년, 2023년, 2022년 이내에 수료만 이정 대표자의 수료증 인정(또는 법인 내 등기이사 인정) 직원, 조합원, 투자자 등 수료증 불인정

② 인증 심사 지원센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규·갱신 경영체 대상으로 인증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현장 심사 실시

구분	예비	신규	갱신
심사비	었으	20만원	10만원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외부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회로 구성, 서류·현장 심사를 동시에 진행	외부 심사위원 1인과 지원센터 1인을 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진행

③ **자부담 납입** 신청자는 자부담 금액을 해당 지원센터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납입은 별도의 협약서(양도 동의서) 없이 협약한 것으로 갈음

- *입금 계좌: 제주은행 700-100-203278, 사단법인제주농업농촌진흥원)
- *반드시 업체명으로 이체(ex, 농업회사법인 ABC 일 경우, ABC로 기입)
- *신규·갱신 인증 신청시에만 필요(예비 인증신청시 자부담 없음)
- ** 인증심사를 받는 경영체가 지원센터에 비용 지급권을 양도

■ 24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기준

	신규(갱신) 기준	배점
	● 기초 역량 평가 · 사업주(경영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 (증빙)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10
농촌융복 합 산업기반 (40)	●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 기본 인프라 구축 ·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전년기준)	10
-1-H-1	● 창의성, 경쟁력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경쟁력 (20)	●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성 ·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어떻게 연계 활용도	10
지역사회	●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	10
연계 · 상생 (20)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지역내 일자리 창출 기여	10
향후 계획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20)	► 농촌융복합산업화 완성도: 1차,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성	10
가점 (5)	 ● (신규) 예비인증(2), 귀농귀촌(1), 청년(1),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갱신) 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각5
계	105점	



가점표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예비인증자(2)	예비인증 사업자	2
		귀농귀촌(1)	귀농인 확인서	1
	신	청년(1)	19세~39세	1
	규 (5)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기준)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척도)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증빙)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가 점 (5)		사회공헌(2)	 (기준)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기부활동 등 (척도) 실적있음(2), 실적없음(0점) (증빙) 기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2
	갱 신 (5)	자연친화적 경영(2)	 (기준)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자연친화적 경영 (척도) 실적있음(2), 실적없음(0점) (증빙)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 자연친화적 포장재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기준)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척도)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증빙)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2

결과 제출 및 추천

④ 1차 인증심사 지원센터는 인증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5) 최종 인증심사 및 적격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별 추천된 경영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 가하여 최종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

*심사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2~3인으로 구성하고 신규 및 갱신심사 진행

⑥ 인증여부 통지및 인증서 발급

농식품부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여 인증(갱신)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인증(갱신) 여부 통지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발급

▋인증 갱신 및 유지 사항

- 유효 기간 _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 갱신 신청 _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기간 만료 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갱신 신청
 - *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 절차를 통보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실시
- **갱신 탈락** _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지원센터는 인증서 회수 등 적의 조치
 - 융복합 지원센터는 갱신 탈락 경영체를 즉시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이를 알려 미인증 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 (카페, 휴게음식점 등) 정지 등 사후 조치
 - 시·도는 갱신 탈락 경영체를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 법인의 사업내용 변경 등 경영체 등록 변경 등 시정 조치 요청
- 사업 계획 변경 _ 원물 품목의 전량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원센터로 신규 인증 신청하고.
 - 주원료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서, 원물 구매내역 등 자료를 센터에 제출, 시·도 심의를 거쳐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인증서 재발급
 - 주원료가 삭제되는 경우에도 지원센터로 반드시 내용 변경 신청, 센터에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인증서 재발급
 - * 지원센터는 변경인증 경영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승계 및 내용 변경** _ 인증 유효기간 내 승계 및 재발급 사유 발생 시 1개월 내 지원센터로 변경 신청, 지원센터는 변경사항을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변경 이력(엑셀파일 형태)을 농어촌공사에 공문 송부
 -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은 승계 및 재발급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에 대상자 공문을 송부하고, 농식품부는 변경된 인증서 발급
- 인증 취소 _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인증,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경우, 1년간 사업 중단, 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 **사후 관리** _ 인증사업자의 갱신, 취소 등으로 기존 인증서가 변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는 인증서를 즉시 회수 조치하고 인증서 번호, 담당자, 일시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별도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원센터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점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적의 조치
 - *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지원센터 등 합동 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

원물사용

주원료 사용 비율(지역산 50%, 국산 100%)은 원산지 단속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시 인증 취소 및 인증 신청 제한(3년간) 등 조치

인증 표시 등 위반

인증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원료로 만든 제품의 인증 로고 등을 사용하거나 인증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인증로고를 사용할 경우, 계도 기간(3개월)을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자체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1-1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제도 운영

제도 개요

- 목적 _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 인증제를 확대하여 인증제도 확산 및 내실화 도모
- 요건 _ 융복합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사업자 인증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에게 예비인증자격 부여
 - * 대상주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주원료 지역 비율(50%이상)
- 예비 인증 심사 _ 지원센터는 요건을 충족하는 미 인증 융복합추진 경영체를 발굴하여 심의(자체 가능) 과정을 거친 후 예비인증자 선정
- 예비 인증심사 결과 제출 _ 지원센터는 예비인증심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예비인증여부 통지 _ 한국농어촌공사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고,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는 예비인증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예비인증 여부 통지 * 예비사업자 인증서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발급 가능
- 예비인증서 _ 별도 발급 되지 않으며, 선정 공문 발송으로 대체
- 지원 혜택 _ 안테나숍 입점을 비롯한 품평회, 박람회 등 사업 추진 시 센터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본 인증시 가점 부여 등

▋예비인증제도 확산 방안

- 배경 _ 예비인증제도 도입('21) 이후 인증 조건 및 혜택 한계에 따른 경영체의 참여 저조로 제도 도입 퇴색
 - 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창업농 대상 예비인증제도 홍보 및 성과 도출 필요
- 농진청 협업 _ 농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과정을 이수한 경영체 중에서 예비인증 기본요건을 갖춘 경영체에게 예비인증 자격 부여
- 예비 인증심사 결과 제출 _ 지원센터는 예비인증심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추진절차)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또는 농진청 업무 협약→ 가공센터 교육 이수 경영체 예비인증 자격 부여→우리부와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기대 효과 _ 성장 잠재력이 있는 초기 창업농을 예비인증제도라는 제도권안으로 유인하여 우리부와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판로,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 창출 기대



02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2-1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 목적 _ 농촌융복합 예비인증사업자, 인증사업자의 역량 도모를 위해 전문가 매칭 지원
- 주체 _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위탁(국비 37.5%, 지방비 37.5, 자부담 25)
- 현황 _ 경영, 마케팅, 재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금년은 약 397명 ('23년 467명에서 15% 감축) 위촉 예정
 - * 전문위원을 매년 15%씩 감축하여 '25년까지 300~350명 수준을 유지

< 23년 컨설팅 전문위원 현황>

				경	영			기술					
구분	합계	경영 전략	마케팅/ 디자인/ 홍보	재무/ 생산성 향상	지적 재산권/ 법률	농촌 관광	수출	제품개발/ 가공기술	<i>공</i> 장 신·증축	품질·위생 관리/공정 개선	ICT	음식 개발	기타
계	467	86	119	28	13	44	17	51	13	44	20	19	13
신규위원	92	14	25	8	4	7	5	7	5	5	6	4	2
재임위원	375	72	94	20	9	37	12	44	8	39	14	15	11

< 23년 컨설팅 전문위원 지역별 현황>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계	467	67(6)	63(32)	19(21)	21(18)	63(5)	92(7)	34	41	32(41)	20	15(7)
신규위원	92	10	8	6	5	16	17(1)	11	10	6	1	2(1)
재임위원	375	57(6)	55(32)	13(21)	16(18)	47(5)	75(6)	23	31	26(41)	19	13(6)

▋ 전문 상담 및 코칭현황 실적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컨설팅건수	21,002	1,894	2,080	2,346	2,485	2,929	3,154	2,924	3,310
수혜경영체	6,829	642	723	781	845	921	984	931	1,002
전문위원	2,734	219	312	367	391	4 12	422	298	313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세부내용

- 지원센터는 경영체 신청 시 경영체의 성장단계를 파악하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전문위원을 추천
- 다만, 경영체가 원하는 전문위원을 가급적 매칭시키되 전문위원이 동시에 과도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며 경영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 평가

구분	주요내용	기간 및 비용
유형① (일반 코칭)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목적으로 최대 4건까지 지원	<mark>경영체당 1건당 40만원(자부담 10만원)</mark> (건당 최소 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최대 4건, 160만원)
유형② (제품 컨설팅)	온·오프라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유통업체에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 입점을 전제로 제품 품질관리, 포장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코칭	경영체당 1건 240만원(자부담 60만원) (최대 2건, 480만원)
유형③ (보육 매니저)	경영진단, 사업계획 수립, 미케팅 등을 지원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상시 모니터링·컨설팅	경영체당 1개월 80만원(자부담 20만원) (최대 12개월, 960만원, 월 2회 8시간 이상 방문 등을 통한 컨설팅)

- 지원 제외 _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제외
- 지원 분야 _ 경영·기술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 지원

분야	지원 대상 분야
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식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술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기타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 추진 절차

① 현장코칭 신청		② 전문위원 매칭 및 상담		③ 수행계획서 작성 및 자부담 입금		④ 컨설팅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⑤ 만족도 조사 및 수임료 지급
경영체		지원센터 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영체		전문위원 경영체		경영체 지원센터
공고일~10월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내용 검토 및 전문위원 매칭·상담	8	제출된 수행계획서 확인 후 자부담금 입금 진행	8	지원센터 현장코칭 모니터링 실시	>>	진행된 현장코칭에 대해 만족도 조사 실시

컨설팅 매칭 (상세문의: ☎064-722-7916)

- 접수 _ www.제주6차센터.com 홈페이지 상단 현장코칭-지원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애로사항 등을 유선 또는 현장 방문하여 상담
-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 선정 공문
- 매칭 및 통보_ 코칭 분야 및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보육매니저 또는 전문위원을 배정하고, 신청인의 수락 후 컨설팅 진행
- 금액 납입 _ 신청자는 유형별 자부담 금액(총 비용의 25%)을 해당 지원센터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납입**은 별도의 협약서 (양도 동의서)없이 협약한 것으로 갈음
- * 지원센터 명의의 별도계좌 개설 후 자부담 입금 계좌로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사업 수익금'으로 처리하되 자부담금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므로 부가세 등 세금 문제는 발생되지 않음
-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받는 경영체가 지원센터에 상담 및 현장 코칭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 지급권을 양도

컨설팅 수행

- 계획서 접수_지원센터는 신청 및 상담내용 등을 전문위원에게 제공하고 전문위원은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수행(보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와 신청인에게 제출
- * 수행계획서는 방문시기, 코칭분야·범위 등에 대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작성하며, 지원센터에 제출 시 일종의 협약으로 간주
- 컨설팅 진행 _ 유형별로 세부 요령 매뉴얼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 진행
- **결과 보고서 제출** _ 전문위원은 상담 및 코칭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매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원센터와 경영체에 제출
- * 수행결과 보고서 추가내용 보완 필요시 1회에 한해서 지원센터 협의 하에 기간 연장 가능

사업결과 분석 및 정산 보고

- 정산 _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이 완료되면 수행 결과의 적정성, 경영체의 만족도 등을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수임료 지급
- * 신청인이 납부한 자부담을 포함한 총 비용으로 전문위원의 수행(보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별도 수임료는 없음
- 모니터링 _ 각 시·도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컨설팅 중 부정, 도덕적 해이, 불성실 방지 등을 위해 노력
 - * 시·도는 신청 접수, 상담 및 전문가 매칭 절차, 자금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 점검



2-2 | 현장코칭 연계 고도화 지원사업

현장코칭 연계 고도화 지원사업

- 목적 _ 제품개발·개선 등을 통한 제품의 인지도 제고, 현장코칭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대상 _ 제주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_ 제품 개발·개선 등 비용 경영체별 최대 5,000천원
- 추진절차 _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진행	① 모집기간		② 평가 및 선정		③ 현장코칭 신청 및 사업수행		④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지급
시기	2~3월	>>	3월	③	4월~7월	>>	8월
역할	① 신청서 제출 ② 전문위원 매칭 ③ 시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센터 서면심사		전문위원 매칭 후 현장코칭 신청 및 자부담 입금 진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23년 추진실적



03 | 지역 및 중앙단위 판로·마케팅

01 지역단위 판로·마케팅 활성화

- 목적 _ 농촌융복합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테스트를 통해 개선 방안 도출, 대형 판매 플랫폼 입점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 주체 _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위탁 수행(국비 50%, 지방비 50)
 - (안테나숍) 소비자 반응 및 성향을 파악하고,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테스트 공간으로 마케팅 거점 활용

*안테나숍 현황: ('16) 28개소→('17) 30→('18) 35→('19) 41→('20) 48→('21) 60→('22)73→('23)85

- (판매 플랫폼) 온·온라인 플랫폼 프로모션, 판촉행사를 활용한 기획 판촉전
- * 플랫폼·판촉참여: ('16) 90건→('17)131→('18) 123→('19) 148→('20) 158→('21) 212→('22)342→('23)356

< 23년도 안테나숍 및 플랫폼 현황>

구분	총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안테나숍	83	7	11	5	23	7	5	8	5	8	3	1
플랫폼 참여횟수	385	49	43	55	45	34	31	26	85	15	-	2

- (제주 안테나숍 8개소 운영)

연번	지점명	구축일자	주소
1	이마트 제주점	2015.4.30.	제주 제주시 탑동로 38
2	이마트 신제주점	2015.4.30.	제주 제주시 1100로 3348
3	이마트 서귀포점	2015.4.30.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9209
4	이마트 서울 목동점	2015.12.8.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5	이마트 서울 용산점	2016.6.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6	제주드림타워점	2021.10.22.	제주 제주시 노연로 12, 제주드림타워 3층
7	제주에이바우트 스타디움점	2023.3.7.	제주 제주시 거로남4길 57-15
8	탐나오 '제주 농부의 장'	2023,7,3	(온라인)https://www.tamnao.com/web/sv/sixIntro.do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 서귀포점



이마트 서울 목동점



이마트 서울 용산점



제주드림타워점



제주에이바우트 스타디움점













탐나오 '제주 농부의 장'

● 세부 추진 내용

- (연계지원) 제품 개선을 위해 현장코칭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소비자 반응 및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중앙협업 판로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
- 판촉지원 _ (23년 기준, 판촉지원 12건, 판촉전 개최·지원 16건(199개소))

연번	판촉내용	기간	지원건수
1	안테나숍 드림타워점 설맞이 증정 이벤트	23.1.20.~23.1.24.	1
2	2023 식품대전 제주잇수다 '6차산업 ZONE' 이벤트	23.4.7.~23.4.9.	1
3	안테나숍 이마트 제주/신제주/서귀포점 1+1 프로모션	23.5.19.~23.6.30	3
4	안테나숍 이마트 목동점 '재발견프로젝트' 증정 이벤트	23.6.22.~23.7.22	1
5	안테나숍 드림타워점 'Summer Vacance' 프로모션	23.8월	1
6	2023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대전 판촉 지원	23.9.9.~23.9.10.	1
7	안테나숍 에이바우트점 '6차와 함께 가을가을' 프로모션	23.9월	1
8	안테나숍 이마트 목동/용산점 증정 프로모션	23.10월	2
9	아름다운 제주 국제마라톤대회 경품 제공 프로모션	2023.10.23.	1
	합계		12

연번	판촉전명	기간	참여기업(개소)
1	2023 수원메가쇼시즌1	23,03,30~23,04,02	4
2	2023 식품대전 제주잇수다 시즌1	23.04.07.~23.04.09.	10
3	메가쇼 2023 시즌1	23.06.15.~23.06.18.	8
4	제5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23.07.21.~23.07.23.	96
5	세텍메가쇼 2023	23.08.24.~23.08.27.	4
6	청정 제주 休산품 및 특산물 대전	23.09.09.~23.09.10.	14
7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23,10,06.~23,10,07	3
8	2023 제주 귀농귀촌·청년농부 박람회	23.10.13.~23.10.14.	2
9	제7회 제주밭담축제	23,10,21,~23,10,22,	7
10	제2회 국제Smart농업엑스포	23.11.01.~23.11.03.	4
11	메가쇼 2023 시즌2(킨텍스)	23,11,09,~23,11,12,	5
12	제주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봉은사)	23,11,12,~23,12,13.	5
13	한국마사회와 함께 제주특산품 판촉행사'제주장터'	23,11,18.~23,11,19.	4
14	2023 제주감귤박람회	23,11,30,~23,12,04,	10
15	제주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관문사)	23,12,03,~23,12,03,	3
16	도민과 함께하는 농.세.페(온라인판촉전)	23.12월	20
	합계		199

02 지역·중앙 협업 판로 확대 지원 사업

- 목적 _ 대형 플랫폼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우수기업 제품을 중앙단위에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입점을 지원하여 판로 확장성 도모
- 주체 _ 한국농어촌공사,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내용 _ 지원센터는 우수 제품 등을 공사에 추천 및 경영체 예산 지원, 공사는 지역에서 협의가 어려운 대형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과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모션 및 입점 추진
 - ▶ 대형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등에 지역별 우수제품을 순환하여 입점
 - 네이버 주관 기획라이브 「전국 팔도유람」참여 지원
 - * 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 입점 경영체 택배비 직접 지원(경영체당 50만원 한도)
 - ** 엑셀러레이터 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20개소 별도 대형 플랫폼 입점 추진
 - ▶ <mark>우체국</mark> 상설 전용 판매관 신규 입점 지원 및 기 입점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 지역별 할인쿠폰(평월 10%, 설·명절 등 기획전 15~30%) 지원



네이버「전국 팔도유람」개요 ※ 구독자: 2.3만명, 평균시청자수: 1만명

- 제철상품(1차 원물상품 위주)을 주로 하여 1차 원물과 가공상품 판매
- 전문 쇼호스트가 아닌 생산자가 직접 판매
- 판매 상품을 요리하거나, 미리 요리된 음식 시식하는 모습 필수
- 기획전 캘린더 노출을 통한 사전 홍보 및 네이버 페이 지급 이벤트 제공
- 라이브링크 :https://shoppinglive.naver.com/channels/70538 ◀ 전국 팔도유람 상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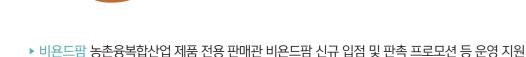


우체국 브랜드관 평월 프모모션 이미지 (PC화면)



우체국 브랜드관 설 기획전 이미지(모바일화면)

(약 11평)



 구 분
 위 치
 면적
 운영사

 양재점
 서울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 내
 36㎡ (이 4개점)
 (사)전국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 * (사)제주6차산업협회 회원사 대상 입점 및 판촉지원 추진
- ▶ 박람회 참가 국내 최대 푸드쇼인 메가쇼 등 박람회에 대규모로 참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및 마크 인지도 향상 제고
 - * 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 경영체 참가 부스비 지원



'23년 메가쇼 부스 조감도



판매부스 사진

04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팅

- 목적 _ 민간 투자·협업으로 성장을 한 인증사업자를 발굴,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확장성 기반 마련
- 주체 _한국농어촌공사,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주요 내용 _ 우수사례 경진대회(외식업체 컨테스트 포함), 스타 융복합기업 선정, 센터장 회의, 협의회 운영 지원 등
- ▶ 경진대회 중앙심사를 기존의 서류·현장·발표심사 3단계에서 현장·발표심사 2단계로 축소하고 선정 경영체를 10개소에서 6개소로 조정
 - * 시상금은 협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 ▶ <mark>스타 기업</mark> 격월로 민간투자·협업 등 다양한 성공 사례 기업 1개소를 선정하여 보도자료 배포, 6차산업.com게재 등 홍보 (예시 : 제1호 스타 융복합 기업)
 - * 기업 추천(지원센터)→심사 및 선정(농어촌공사)→최종 선정 및 홍보(농식품부)
- ▶ 센터장 회의 센터별 사업 실적 및 계획 공유를 위해 분기별 1회 실시, 각종 현안 발생 시 간담회 등 개최
- ▶ 인증제도 관리 신규·갱신·예비인증 최종 심사, 간담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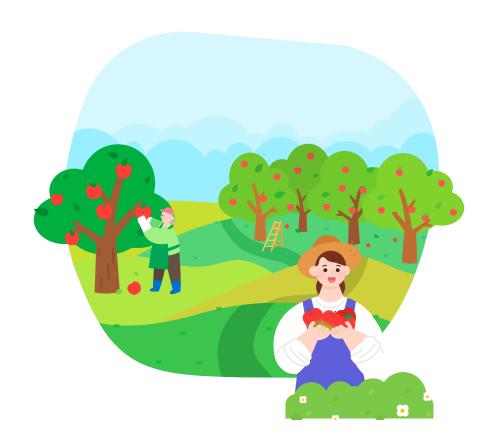


05 |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목적 _ 농촌융복합산업 시행 주체와 인증경영체간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대국민 홍보의 중추적 역할 등을 수행할 시스템 운영
- 주체 _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국비 100%)
- 주요 내용 _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이용자(경영체,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현행화 등
- ▶ 6차산업.com 예비 인증 및 인증 경영체를 위한 정책 공유, 소비자의 연령별, 소비패턴별 인증제품 소개 등 농촌융복합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6 자금(융자)지원 *세부시행지침은 별도 수립

- 목적 _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 지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형태 및 지원 한도
 - ▶ 시행주체 및 지원형태 시장·군수·구청장/융자 100%(이차보전)
 -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최대 20억원)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최대 3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 ▶ 지원 절차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대출(농협은행→농업인)



07 | 6차산업 포장재비 제작 지원사업

● 목적

- ▶ 제주6차산업 인증사업자들의 포장박스 제작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및 환경 개선 선도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제주 6차산업 브랜드 홍보 효과 창출

● 주요 내용

- ▶ 차별화된 6차산업 제품 포장재(포장박스 등) 제작 지원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홍보 관련 포장재 등 지원(12개소)
- * 6차산업 인증사업체 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업체('24.1월기준): 총 20개소
-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지원: 8개소 지원완료
- * 연도별 지원업체 대상 (누계 20개소)

연번	23년 지원업체(8개소)*	24년 지원업체(12개소)
1	농업회사법인(주)아침미소	제주시산림조합임산물유통센터
2	서귀포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한라산식품
3	하효살롱 협동조합	담은제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4	농업회사법인(주)큰행복	청정제주녹차영농조합법인
5	메밀밭에가시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6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샘영농조합법인
7	농업회사법인(주)제주클린산업	이맘주식회사
8	(쥐)청원	제주웰빙영농조합
9		농업회사법인 ㈜갈중이
10		마크로비오틱올리브
11		생드르영농조합법인
12		농업회사법인 제주양조장

^{* &#}x27;23년 지원업체(8개소): 업체당 포장재 지원 완료



● 2023년 추진실적

▶ 친환경 박스테잎 제작 및 배포(23.4월 기준, 169개소 배포)



생분택기도는 진환경 테이프 합니다 그녀는 제주목법자되도 나 (그도 작구도 [제주고형사랑기부경패인] (6: 제주6회산업

▶ 고향사랑기부제 포장재 제작 지원(8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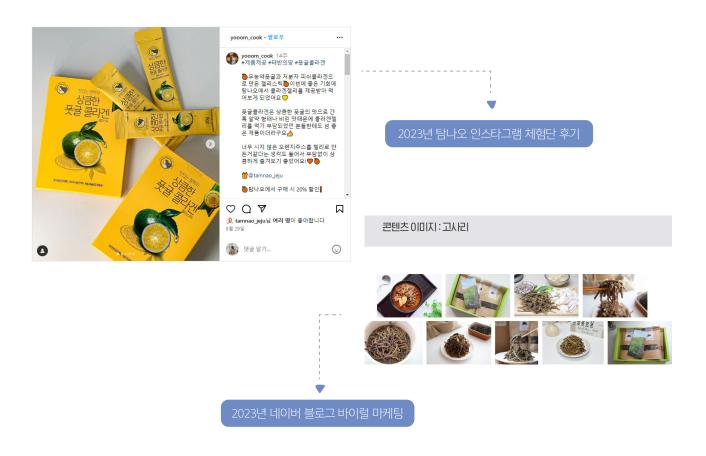
08 | 6차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온라인)

- 목적 _ 온라인(탐나오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
- 주요 내용 _ SNS 바이럴 마케팅 및 할인 프로모션 등 진행
 - ▶ SNS 바이럴 마케팅
 - 인스타그램 제품 체험단 및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진행
 - * 인스타그램 체험단 모집 후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예비 잠재고객 확보 및 실질적인 후기 작성으로 제품 마케팅 강화
 - * 블로그 인플루언서 활용하여 제품 및 탐나오 온라인 안테나숍 '제주 농부의 장' 홍보

구분	금 액 (1개소당)	사업운영 계획
사업비	2,000천원	사업비는 SNS 마케팅 광고비로 집행되며 센터에서 홍보대행사로 일괄 집행 예정
자부담비	400천원	SNS 마케팅 상품 구매비로 참여 경영체로 집행 예정
Total	2,400천원	(총 7개소 모집)

▶ 2023년 추진실적

- (SNS 체험단)인증사업자 10개소 참여, 인스타그램 및 릴스 130건 후기 발생
- (인플루언서 활용) 인증사업자 5개소 참여, 홍보 포스팅 38건 실시





- ▶ **할인 프로모션** 온라인 안테나숍 탐나오「제주 농부의 장」 입점 전체 예비 및 인증경영체 대상으로 '명절 기획전' 및 '농촌융복합산업 세일페스타(농세페)' 등 할인 프로모션 진행
 - * 탐나오 '제주 농부의 장' 신규 입점 계속 추진하며 할인쿠폰비 사업비에서 지원

2023년 「제주 농부의 장」 할인 프로모션 안내 홍보물



09 제주6차산업협회

• 목적 _ 제주 지역의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 다양한 사업과 지원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함

연혁

연번	시기	내용	비고
1	2016.3.29	창립총회	
2	2017.7,20	사)제주6차산업협회 설립	
3	2016년~2018년	1기 회장단 운영	이성철
4	2019년~2021년	2기 회장단 운영	이기승
5	2022년~현재	3기 회장단 운영	성주엽

- 가입대상 _ (가입시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사업자 해당없음)
- **가입 방법** _ 가입비 100,000원, 연회비 200,000원
 - ☎ 문의: 010-9678-5646, jeju6th.office@gmail.com, 제주6차산업협회.com
- 주요 사업내용
 - ▶ 선진지 견학
 - 협회 회원 대상, 타지역(도외) 우수 인증사업자(협회) 선진지 견학지원
 - ▶ 홍보 및 판매
 - 타사업·타지역 대상, 제주6차산업 협회 회원사 홍보
 - 6차산업협회 플리마켓 개최
 - ▶ 지원사업 참여추천 등
 -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스타기업, 우수외식업체 등 추천
 - 순회역량강화교육 인증사업자 협회 회원사 추천
 - ▶ 협회 정기총회
 - 협회 정기총회 운영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연계



• 운영실적

▶ 선진지 견학







2023년 제주6차산업협회 선진지 견학

▶ 2023년 순회역량강화 인증사업자 협회 회원사 추천



▶ 2023년 순회역량강화 인증사업자 협회 회원사 추천









Ⅲ. 기타자료(인증신청 관련 서류 등)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관련 서류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신규·갱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	실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LII OL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 1)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	조합, []농업회사법인	인, []기타
신청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리	배 등), [] 1×2×	3차형(복합형)
20 40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유효기건	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R 사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저	2조, 제4조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	축 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 의 서류는 변경 사항 있는 경우 만 제출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시한 경우)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동 의 서		
위의 확인사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동이용을 통하여
	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3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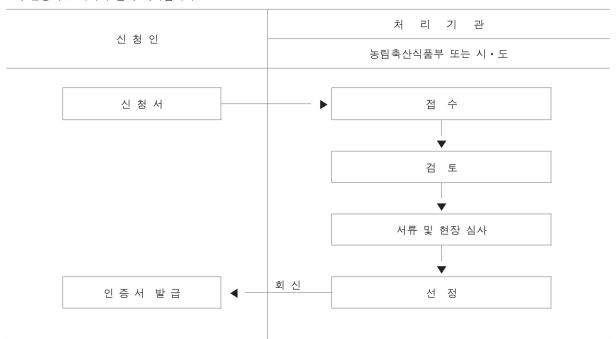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5.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6.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승계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A -11	인증 번호	승계일		
승계	사업장 소재지			
내용	승계 사유 [] 상속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부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산업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농림축선	신고인 산식품부장관 귀하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증 사업자 승계사실 증명 자료 2. 기 발급된 인증서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농촌융복합신 합니다.	t업 사업자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승계인 정보와 승계 내 -	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		
H 1 1.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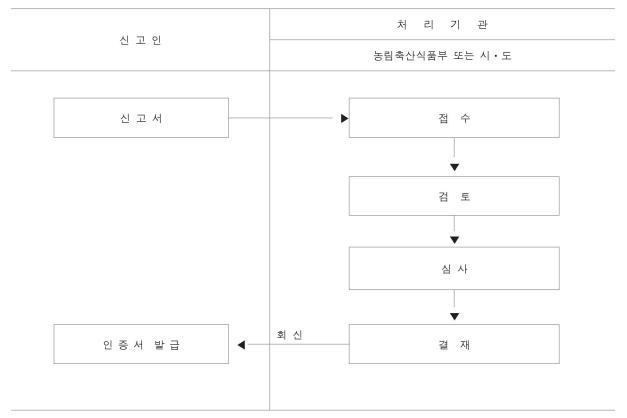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4. 신청 단위는 승계인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5. 주소란에는 승계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3 농촌융복산업 사업자 인증서(안)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증번호: 제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 1. 성명(법인명):
- 2.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3. 대표자명:
- 4. 유효기간:
- 5. 주 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

< 변 경 사 항 >

일 자	내 용	확인
2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농촌경제과

붙임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규 인증 시 사업계획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5쪽 중 1쪽)

사 업 계 획 서(신규)

- I. 추진 사업의 명칭:
- Ⅱ.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 .)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설 립 일	
연 락 처	<u></u> 설 립 일	
주 소		
업 종	자본금 백만원	
주 생 산 품13)		
■ 총 매출액: 백만원 대출액 및 고용 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 유급종사자: 명(상시14): 명, 임시15):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 자가생산 농장면적 : m²(전 답)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 m²(전 답)	
사업장 현황	차 * □ 자가생산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 해당부분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2 차 공장면적 : ㎡(대지 건물)	
	3 시설면적: 체험 ㎡, 음식점 ㎡, 숙박 ㎡, 직매장 ㎡, 기타 ㎡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명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 순으로 기재)	

¹³⁾ 매출액 기준 상위 3가지 상품(제품)을 기재하며, 사업자의 주요 분야가 식당(농가맛집 등)일 경우 매출 상위 3개 메뉴를 기재합니다.

¹⁴⁾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¹⁵⁾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Ⅲ.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역량]

1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	---------	----	----	---------	------	------	-----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신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IV.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추진 실적]

①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 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 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② 고용 현황

(단위: 명)

-1 12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유급종사자		종사자
	구 분	총 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 사업의 개요 및 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 추진계획 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사업의 개요, 기본 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2차·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 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

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하우, 홍보·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 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차 가공, 3차 체험·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 전년 기준

W 12	표 공 소요량 기기계시		계약	재배	매입(농협 등)	
품 목	(톤)	자가생산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 지역: 사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의미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작성 예시 : [향후 3년간(당해년도 포함)의 계획 30톤 / 3년] -> <u>10톤</u>

품 목	· 목 총 소요량 자가생산 ·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古古	(톤)	^f/f생산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1
71	ᄃ
/	-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붙임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갱신 인증 시 사업계획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7쪽 중 1쪽)

사 업 계 획 서(갱신)

- I. 추진 사업의 명칭:
- Ⅱ.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 .)

성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명		- 설립일
연 락 처		5 H E
주 소		
업 종		자본금 백만원
주 생 산 품16)		
매출액 및 고용 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 총 매출액(전년도): * 농산물 생산(1차): , 농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17): 무급종사자: 명(가족:	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 명 임시 ¹⁸⁾ :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사업장 현황	1차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 [] 자가생산 시설면적:	d: m'(전 답) - 매입 등) 농장면적: m'(전 답) - m'(하우스 축사 기타) - 매입 등) 시설면작: m'(하우스 축사 기타)
* 해당부분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2차 공장면적: ㎡(대 	지 건물)
	3차 시설면적: 체험 m²,	
특이사항	(인·허가 , 정·	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 해당 없음	* [] 설치·운영(아래 내용 작성)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1 시설 주소: 2 건축물 종류: 3 사업계획 승인일자: 	

¹⁶⁾ 주생산품란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3가지 상품(제품)을 기재하며. 사업자의 주요 분야가 식당(농가맛집 등)일 경우 매출 상위 3개 메뉴를 기재합니다.

¹⁷⁾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¹⁸⁾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 인원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

Ⅲ. 추진실적

- 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역실적 (3년간: 갱신연도 미포함)
- ① 주력제품(상품)의 지역 농산물 사용실적(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내 매입 등)

연도	주력 상품명	농산물	소요량 (ton)	지역농산물 사용량(ton)	지역농산물 사용비율(%)	조달방법 (자가, 계약, 매입)
	주력 상품 1	농산물①				
		농산물②				
20 년		농산물③				
(갱신신청 전년도)	주력 상품 2					
2 0 년						
(전전년도)						
20 년						
(인증(갱신)						
년도,						
전전전년도)						

②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 현황

계약농가	계약기간	계약품목	계약물량	지급금액
(성명, 농원명)	(년/월~년/월)		(kg)	(천원)

2.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 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	년(갱신신청 전년도)			
20	년 (전전년도)			
20	년 (인증(갱신)년도, 전전전년도)			

추진실적 ③ 고용실적,

③ 고용실적, ④ 사업자 역량강화 실적, ⑤ 기타

3. 고용실적

(단위: 명)

	구 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종사자	무급종사자		
	丁 亚	중 고중인된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20	년(인증(갱신)년도, 전전전년도)					

-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 4. 사업자 역량강화 실적
-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5. 기 타

기타 사업성과 자유 기술

I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사업의 개요 및 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추진계획 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 \cdot 2차 \cdot 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 \cdot 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 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하우, 홍보 · 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진사업의 실 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차 가공, 3차 체험·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 전년 기준

五口	총 소요량	자가생산	계약	재배	매입(농	·협 등)
품 목	총 소요량 (톤)	작가생산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 지역: 사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의미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작성 예시: [향후 3년간(당해년도 포함)의 계획 30톤 / 3년] -> <u>10톤</u>

ᅏᇦ	총 소요량	וג (וג לכי לכי	계약	재배	매입(농협 등)		
품 목	(톤)	자가생산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재원조'	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	획

	1	
71	T= _	
	- 1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붙임 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규·갱신 인증 심사표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심사위원	(서명)

							심사점수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최우 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역량	1-1.사업주(경영주)의 3년간(신청년 도 포함) 관련 교육 참가	횟수	4 회 이상	3ই	2회	1회	0회
		(10)	,	10	10	8	6	4	2
농촌 응복합 산업	1.사업체의 역량 (30)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10)	1-2 최근 3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 제표 작성 여부)	10	10	8	6	4	2
기반 (40)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구축(10)	1-3.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10	8	6	4	2
	2 지역농신물	지역농산물	2.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비율 (%)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시용정도 (10)	사용 비율(10)	(전년도 기준)	10	10	8	6	4	2
경쟁력	3. 창의성 및	창의성,경쟁력 (10)	3-1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 성, 차별성	10	10	8	6	4	2
(20)	[기어리] 기어리	3-2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어떻게 연계 활용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4. 지역과의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10)	4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10	8	6	4	2
연계· 상생 (20)	연계성(20)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10)	4-2 지역네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10	8	6	4	2
향후 계획	5.계획의	계획수립의 적 절정(10)	5-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 (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20)	타당성 (20)	완성도(10)	5-2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융 복합성	10	10	8	6	4	2
6.7	• (신규) 예비인증(2), 귀농귀촌(2), 최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갱신) 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각5		•	_ 점		
	합계							점	
삼차 의견									

붙임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위원 서약서

심사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평가구분	■ 서류심사	/ ■ 현장실/	\ }-	
평가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서 약 서

본인은 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위원으로서 본 인증을 심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전문위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에 있어

- 1. 현장코칭 사업수행에 있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올바른 절차에 따라 수행하겠습니다.
- 2. 현장코칭 전문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현장코칭 위원의 체면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 4. 컨설팅 안건의 실시자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 경영체와 정당하지 않은 금전거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 5. 신청 경영체의 대표자(임원) 또는 이해관계인(해당 경영체 퇴직 후 2년 이내, 공동 특허권자 등),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컨설팅을 회피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위원의 해임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확인 : 소속 성명 (서명)

OO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장

붙임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Ⅰ. 추진 사업의 명칭:

성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u>5</u>			
대 표 자 명		인증번호	<u> </u>			
연 락 처		인증유효기	1간			
주 소						
업 종						
주원료(주생산품)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농촌융복합 유형	(1차) (2차) (3차)	(2	차) 차) 차)			
기타 변경내역						
변경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특이사항						
증빙자료	주원료가 추가되는 경우, 주원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사업		증빙가능 여부	등 신규	계획서에	준하는

20 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붙임 9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변경계획서

사 업 계 획 서(변경)

- Ⅰ. 추진 사업의 명칭:
- Ⅱ.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 .)

성명(법인명)	인증번호
대 표 자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설립일
주 소	
업 종	자본금 백만원
주원료(주생산품)	(변경전)
1 624(1 8 6 6)	(변경후)
매출액 및 고용 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 총 매출액(전년도): 백만원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 명, 임시: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자가생산 농장면적: ㎡(전 답) *[] 그 와(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전 답)
사업장 현황	*[] 자가생산 시설면적: m²(하우스 축사 기타)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m²(하우스 축사 기타)
* 해당부분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2차 공장면적: m'(대지 건물)
	시설면적: 체험 m², 음식점 m², 숙박 m², 3차 직매장 m², 기타 m²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명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 해당 없음 * [] 설치·운영(아래 내용 작성)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① 시설 주소: ② 건축물 종류: ③ 사업계획 승인일자: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차 가공, 3차 체험·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작성 예시: [향후 3년간(당해년도 포함)의 계획 30톤 / 3년] -> <u>10톤</u>

품 목		총 소요량	ا الداد اد	계약	재배	매입(농협 등)			
		(톤)	자가생산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기존			%	%	%	%	%		
인증 품목			톤	톤	톤	톤	톤		
			%	%	%	%	%		
추가			톤	톤	톤	톤	톤		
품목			%	%	%	%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	E	ŀ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붙임 10 농촌융복합산업 시업자 변경인증 심사표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심사점수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최우 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역량	1-1.사업주(경영주)의 3년간(신청년 도 포함) 관련 교육 참가		4 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10)		10	10	8	6	4	2	
농촌 융복합 산업	1.사업체의 역량 (30)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10)	1-2 최근 3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 제표 작성 여부)	10	10	8	6	4	2	
기반 (40)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구축(10)	1-3.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10	8	6	4	2	
	2 지역농신물	지역농산물	2.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비율 (%)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사용정도 (10)	사용 비율(10)	(전년도 기준)	10	10	8	6	4	2	
경쟁력	3.창의성 및 활용성(20)	창의성,경쟁력 (10)	3-1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 성, 차별성	10	10	8	6	4	2	
(20)		지역내 자원과 의 연계 및 활 용성(10)	3-2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 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을 어떻게 연계 활용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4.지역과의 연계성 (20)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10)	4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10	8	6	4	2	
연계·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10)	4-2 지역네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10	8	6	4	2	
향후 계획	5.계획의	계획수립의 적 절정(10)	5-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 (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20)	타당성 (20)	완성도(10)	5-2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융 복합성	10	10	8	6	4	2	
6 .가점 (5)		 (신규) 예비인증(2), 귀농귀촌(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갱신) 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각5	_ 점					
	합 계							점		
삼 위 의견										

붙임 1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내용변경 신청서

사업자인증 내용변경 신청서

신청구분		□ 인증내용변경	인증번호	0000-00-000						
신성	丁七	□ 숭계 (□상속 □양수	(인중유효기간)	(0000.0	00.00.)					
		6]スッ)								
구	분	인증내· 당 초	용 번경 변 경	변경여부 1	변경일자	비고				
사업	자명	0 =		□여 □부						
사 9 등록	십 자 ·번호			□여 □부						
경영체 유 형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 기타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 기타 () 	□여 □부						
	자명 월일)			□여 □부						
사업건	장주소			□여 □부						
연 팀	락 처			□여 □부						
사업	계획	기인증 사업계획 내용 (1차,2차,3차)	* 당초 사업계획 내용 변경시 사업계획변경 신청	□여 □부						
기타	사항			□여 □부						
변경	사유									
제출 서류	공통		서 법인등기부등본 □ 관련							
서듀	승계	□ 승계신고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경영체 승계사실 증명자료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 *(상속)기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증명서류 / (양수)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 (합병) 합병 증명서류 등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내용 변경을 신청합니				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					

불임 12 국산 농산물 원산지증명서 샘플 (농산물품질관리원)

[앞면]

구사 노사무 의사지즈며서

			7	_ 0	'긴 큰	U U/	100	~	
생산		433	, ,	판매			생산자(동업인)	
연도	품목	등목 원산지		판매 수량 (kg)	-량 성명 kg) (농장명) 주소·연락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산기	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또는	· 시								
판매기	각							전화	
77		업 체 명						대표자	
공급 받는 2	ーース	업자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	소 재	지					전화	

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

※ 이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자 등이 필요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1588-8112

<작성요령 뒷면 참조>

[뒷면]

작성 요령

- ① 생산연도 : 판매하는 농산물의 생산연도를 기재
- ② 품목: 판매하는 농산물의 품목명을 기재
- ③ 원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 명을 표시
- ④ 판매수량: 해당 농산물의 판매 수량을 기재
- ⑥ 생산자(성명) :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발행한 '농산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자의 성명을 기재
- ① 생산자(주소·연락처):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발급한 '농산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 농업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
- ⑧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생산 농업인 또는 유통업체가 발행한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생산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재
- ⑨ 생산자 또는 판매자 : 판매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
- ⑩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업체의 정보를 기재
- ※ 주의사항

유통업체가 발행하는 농산물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생산자(농업인)가 발행한 '농산물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유통업자가 임의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불임 13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 - 10호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 1. 농어촌지역 지정지역: 대상지역(법정동, 통)내 주거지역
- 2. 대상지역
- 법정동 기준

구 분	법정수	지 정 대 상 지 역
제 주 시	19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서귀포시	20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 ※ 주거지역이 없는 13개동은 농림부 고시에 의해 기 지정
 - 제 주시(12개동): 삼양3동, 회천동, 용강동, 월평동, 영평동, 오등동, 오리3동, 해안동, 내도동, 도평동, 이호1동, 도두2동
 - 서귀포시(1개동): 영남동
- 통단위 기준

구 분	통 수	지 정 대 상 지 역	비고
제주시	4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	
서귀포시	1	송산동(1통)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자가생산 증명서

자가생산 증명서(23년도)

생산자	업체명	
624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23년1월~23년12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붙임 15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	자"라	한다)외	·(과) 매J	도인
(공급자)	_(이하	"공급자"라	한다);	은(는)	다음회	과 같이	계약재바	हे
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m²)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 1.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성 명: (인)

주 소:

매도인(공급자) 상 호:

성 명: (인)

주 소:



매입증명서

소규모 매입 증명서(23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

붙임 17 [샘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ABCD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2.3.2.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ABCD(이하, "본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체험,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 계약제 *베, 메압 및 가공, 체험,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하다.

- 1. 제주 농산물(hijk, lmno 등)을 활용한 EDFG 제품 연구 및 생산
- 2. 제주 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매입 및 가공, 체험, 판매
- 3. *ABCD* 매장 운영(체험, 판매 등)
- 4. 제주 HIJK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 등
- 5. *EDFG* 제품 생산 및 유통 판매
- 6. 기타 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운영

제4조(조직) 본 회사의 운영을 위해 대표자와 생산, 기획,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등 담당 직 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 기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2.3.2.)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조직 및 조직 대표자 000 (인)

붙임 18 원물·가공제품 현황

원물(1차산업)·가공제품(2차산업) 현황

- ※ 필요시 서식 복사하여 사용
- ※ 1차 원물일 경우에는 사진, 원물명 기입

제품사진	제품명(규격, 가격, 주원료, 원산지)
"3 12	※ 제품 뒷면 표기내용 작성

불입 19 유통 · 판매 현황

유통·판매 현황 <u>유통부문 신청 시 작성</u>(직매장 포함)

구분	제품 유통처	관리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하나로마트, 진품센터 등)	직접관리 / 밴더사 활용

붙임 20 체험·서비스 현황

체험·서비스(3차산업) 현황

체험·서비스 부문 신청 시 작성(음식메뉴 포함)

ан	체허프리그래며	1110 EL 114	체험인원(명)		
연번	체험프로그램명	내용 및 구성	22년도	23년도	

2 농촌융복합신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관련 서류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신청서

_	2 2 22 .2						
	● 현장코칭 상담 및 코칭 수행 등을 위해 관련정보(기업,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 현장코칭 추진에 따른 자부담 납부 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코칭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에 동의함 □ * 동의여부를 □에 표시하세요.						
	사업체명	설립년도 대표자					
신	시압시등록반호	<u> </u>					
청	धा(ना)हिस्पेट	인증번호/인증일					
	उन्नाहिस्ट	(인증사업자에 한함)					
업	주 소	홈페이지					
체	연락처	전화 : 담당자(직책/성명) e-mail :					
	면 위기 	팩스 : H.P :					
현	사업유형	□ 식품제조·가공 □ 체험·관광 서비스 / 외식					
황	(해당분야√표시)	□ 유통 □ 기타(※세부유형 작성)					
정	구성현황	<i>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 작성</i>					
	주 품목						
		□ 1유형(40만원/4회) □ 2유형(240만원/2회, 유통업체 입점조건)					
		□ 3유형(월 80만원/8시간 이상, 최대 12개월)					
	신청구분	입점 💥 2유형(240만원)의 경우 기존 입점제품 및 업체 등 컨설팅 전 입점현황 작성					
	7 7	현황 💥 3유형(월80만원)의 경우 보육매니저 현장코칭 기간 기재 필수					
		등 - 보육매니저를 통해 상시컨설팅을 받고자하는 기간					
	□ 경영전략 □ 홍보 □ 재무 □ 생산성 향성						
	신청분야	경영 □ 지적재산권 □ 디자인 □ 수출 □ 마케팅(유통채널 등) □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등) □ 법률(인등록 등 자문)					
지	(해당분야/표시)	┃ ┃ 제품개발 □ 공장신축·증축 □ 품질관리 □ 위생관리 ┃					
도	*신청분이는 신청횟수과 동일	기술 □ 음식개발 □ 공정개선 □ 법규준수 □ ICT(전산화, 쇼핑몰구축·운영 등) □ 가공기술					
신	20%1102	기타 □ 기타					
	희망 전문위원	(소속) (직위) (성명) / (단체명)					
0	화망시기	(교기) (기계) (영향) 기(교기) 00월					
		기존에 현장코칭을 받은 실적 작성(연도와 횟수, 분야 작성) /(예) (2016년) 2회(유통, 가공기술)					
		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공란 부족 시 별지로 작성)					
		l문가 매칭 및 효율적 코칭 추진을 위해 사업장의 규모, 매출액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입점코칭(</i> 2	교칭 <u>(240</u> 만원) 신청 시 입점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제품사진) 및 입점예정 채널 별지 작성					
		<u>10만원) 신청 시 보육매니저를 통해 상시컨설팅 받고자 하는 분야를 상세히 작성, 공</u>					
		도자료로 작성(달성하고자 하는 최소 5개의 목표 포함)					
		용복합산업 지원센터의 2024년도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에 신청하며 상기					
내용	의 코징을 받	고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계획서

1.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대표자)	00영농조합법인 (홍길동)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매출액	
담당자		휴대폰	

2.	애로	사항	(현황	및	문제점)
----	----	----	-----	---	------

※ 경영체가 요구하는 핵심 코칭 희망내용 등을 작성

3. 코칭기간 및 방향

4. 목표 및 예상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전문위원 _____(날인 또는 서명)

불임 3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결과 보고서

1.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대표자)	00영종조합법인 (홍길동)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매출액	
담당자		휴대폰	
코칭 유형	예시> □ 1유형(건당 40만원, 최 □ 2유형(240만원, 유통업 □ 3유형(월 80만원/월 2회	체 입점조건)	,
코칭 신청분야			

2. 현장 코칭개요

전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담당자 확인		
위원	이 름		71	λ-l πl		
·	연락처		직,	∕δ' [†] δ'		
	회 차	일시 / 장소	전문위원 서명	경영체 서명		
	1회차	2024.3.18.(목) 10:00~17:00(7시간), ○○영농조합법인				
~l ~l	2회차					
현장 코칭	3회차					
결과	•••	횟수에 맞게 추가 작성				

3. 현장 코칭 내용

○회차 ※ 회차별/월별 구체적인 코칭내용 작성(관련 사진자료 첨부)

4. 개선사항

- ※ 상시컨설팅, 현장코칭 등을 통해 개선된 사항, 성과 등
- ※ 유형②(제품 컨설팅) 의 경우 입점성과

(입점확인서, 입점계약서 등 유통업체 입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첨)

5. 향후 업체 조치 필요사항

※ 코칭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업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

붙임 4 2024년도 농촌융복합신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만족도 조시표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만족도 조사표(경영체)

1. 신청업체 및 전문위원

조사일시	2024	조사자	
신청업체		대표자	
전문위원			

2. 만족도 조사표

구분	설문내용	항목별 배점				
十七	설문내용		(8)	(5)	(3)	(1)
	-이번에 받으신 현장코칭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이번에 받으신 현장코칭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번 현장코칭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전문가	높고 현실성 있습니까?					
역 량	-코칭 전문위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칭 전문위원이 문제의 핵심내용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코칭 전문위원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가?					
	-코칭 희망분야에 적합한 전문가가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코칭 진행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					
코칭	하십니까?					
전반	-현장코칭을 다른 경영체에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향후 현장코칭을 또 신청할 의향이 있					
	습니까?					
합계	점					
		1		ı	1	
기타						
의견						

※ 만족도 조사는 코칭이 최종 종료(최초 신청한 코칭횟수가 종료된 후)에 조사

불임 5 2024년도 농촌융복합신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시업 신청안내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 야별 맞춤형 코칭지원 및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방문코칭 제공

1. 사업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성장 유도

2. 지워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제외

- 3. 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O 현장 코칭사업은 관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수행

4. 지원 분야

분야	지원 대상 분야
경영	○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술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기타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5. 경영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코칭 횟수 및 기간
 - 유형①(일반코칭): 경영체당 1건당 최소 2회이상 또는 최소 4시간 이상

- 유형②(제품컨설팅):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기존 입점 외 제품을 입점하는 조건
- 유형③(보육매니저): 월 2회·8시간 이상 경영체를 방문·컨설팅 진행(최대 12개월)
 - * 코칭은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
- 코칭비용
- 유형① : 건당 40만원(국비 37.5%, 지방비 37.5%, 자부담 25%) / 최대 160만원
- 유형②: 건당 240만원(국비 37.5%, 지방비 37.5%, 자부담 25%) / 최대 480만원
 - * 유통채널 입점을 전제로 제품패키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 시 건당 240만원 코칭 가능하고, 입점제품이 2개 품목 이상일 경우 2건까지 코칭 가능(최대 480백만원)
 - ** 유통채널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온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입점할 경우 인정
- 유형③: 월당 **80**만원(국비 37.5%, 지방비 37.5%, 자부담 25%) / 최대 **960**백만원
 - * 보육 기간 및 방문주기는 경영체가 선택/월 최대 80만원 지급/방문 시간에 따라 지급(월 2회 8시간 이상 기준)
- 6. 추진절차: 현장코칭 사업의 추진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제주6차산업.com)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진행

PC 신청·접수 → 상담(지원센터↔신청자) → 전문가 매칭 및 통보 (지원센터→신청자) → 자부담 입금 → 현장코칭 → 만족도조사 및 완료점검(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진행)

- 7. 신청ㆍ접수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청기한: 공고일 ~ 2024년 10월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O 접수시기: 수시

- 신청방법: www.제주6차산업.com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 문 의 처: 064-722-7916
- O 담 당: 정준헌 연구원
- O 이 메일: wnsgjs2007@jeju6th.kr
- 8. 구비서류(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
 - O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 선정 공문 1부.